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63
----------	------

발의연월일 : 2021. 2. 2.

발 의 자 : 허 영 · 이규민 · 전재수
노응래 · 김윤덕 · 김민기
박상혁 · 소병훈 · 조용천
위성곤 · 천준호 · 강준현
홍기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

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 3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4항 중 “지정방법, 해체공사”를 “지정방법, 감리원의 배치기준, 해체공사”로 한다.

제5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u></p> <p>① <u>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u>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p>
<p>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p>	<p>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p>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④ (생략)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정방법, 감리원의 배치기준, 해체공사-----

--.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